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무료강의(온라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점검 ·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3.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일환으로 작업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설(붙임)하여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붙임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사업장 내 산재사고 감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접속→회원가입→인터넷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수강신청→나의강의실에서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620-5672~7

붙임. 인터넷 안전보건 무료 교육 과정 개설 안내(별도첨부).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지정인	과장	전결 2022.6.22. 김주실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6077 (2022. 6. 22.) 접수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둔산동 1303 대전지방노동청) / http://www.moel.go.kr/daejeon/

전화번호 042-480-6307 팩스번호 042-480-6295 / jji4816@korea.kr / 대국민 공개

인터넷 안전보건 무료 교육 과정 안내

혁신에 같이와 가치로 답하다

□ 인터넷 교육으로 수강하는 과정(모든 과정 교육비 무료, 시험 無)

❶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 모든 사업장의 대표 또는 공장장, 현장소장과 같은 책임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A항목(사업주 관심도) 가점 부여

❷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대전, 세종, 충청지역 제조업 근로자수 50인~299인 사업장의 사업주

①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2H)
②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교육(4H)

❸ 사망사고예방중점 교육

- 자체 교육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인정 가능

① 사망사고예방중점 인터넷 교육 이수 예시
위험기계·설비 끼임사고 예방교육(2H) +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2H) = 총 4시간 인정
② 기수별(월별) 학습기간 종료 후 같은 과정 수강 시 교육시간 인정

업종	과정명	세부내용	교육시간
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패트롤 현장점검 교육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제조)	2H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건설)	2H
	4대 악성 사망사고예방 교육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	2H
		위험기계·설비 끼임 사고예방 교육	2H
		폐기물처리업 사고사망예방교육	2H
		발전산업 안전보건 기초교육	2H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교육 ※ 조종자격 불인정	1H
		항만하역업 사망사고예방 기초교육	2H
		질식재해 위험현장 교육	2H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현장관리자)	2H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화재감시자)	4H

* 인터넷 교육과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이수 가능(사망사고예방중점 인터넷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 각각 회원가입·교육이수 후 이수증 출력(별도 교육일지 작성·관리 필요 없이 교육 증빙 가능, 5년 보관)

인터넷교육 신청 및 수강방법

①【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상단【인터넷 교육신청】→ ④【사망사고예방중점교육】클릭 → ⑤ 희망과정【수강 신청】클릭
⑥ 상단 【나의 강의실】→ ⑦【수강 중 과정】클릭 → ⑧신청 과정 확인 후【강의실 입장】클릭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 ☎ 042>620-5672~7 대표전화 : 042>620-5673

KOSHA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안내

혁신에 같이와 가치로 답하다

❶ 사업주교육 대상은?

- 모든 사업장의 대표 또는 공장장, 현장소장과 같은 책임자

❷ 사업주교육 참여 신청 방법 (교육비 무료)

① **교육 신청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safetyedu)
② **신청 방법 :** [인터넷 교육신청] → [법정·정책교육]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❸ 사업주교육 수강에 따른 혜택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A항목(사업주 관심도) 가점 부여

❹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 **인정 절차 :**

- **인정 시 혜택 :**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❺ 인터넷교육 과정으로 추진

전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집체교육 방식에서 인터넷교육(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시적)

KOSHA 안전보건체계구축 무료 교육 안내

혁신에 같이와 가치로 답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함

■ **적용범위와 시행 시기는? [법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시행일)]**

- 사업의 종류, 영리 ·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 시행**

■ 교육 안내 (교육비 무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교육

- (교육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업주, 담당자 등
- (교육시간) 2시간 내외
-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장 집체 교육 무료 강사 지원(교육생 100人이상인 경우)

※ (화상교육) 별도의 교육장에 집합하지 않고, 지정된 시간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 이수

- (교육접수)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❷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

- (교육대상) 전 사업장 사업주(관계자) 등
- (교육시간) 2시간 내외
-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시기 등
- (교육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혁신에 같이와 가치로 답하다

❶ 사업주교육 적용대상은?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공동대표 포함)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대리수강 불인정)
  - ·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함.
  - ·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50인 미만인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인정 함.

❷ 인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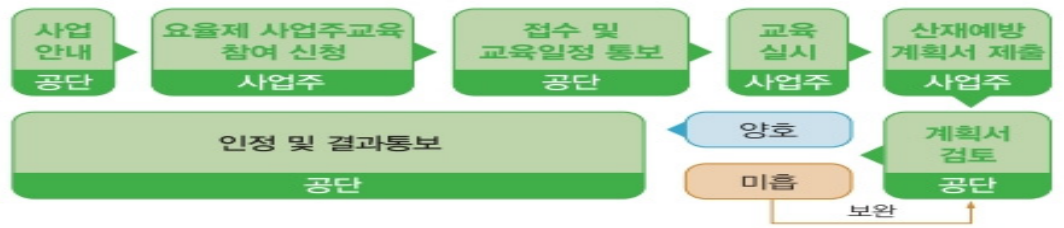

❸ 재해예방활동 참여 신청

① 교육 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법정정책 교육 교육과정(일선기관 선택<대전·세종광역본부>)

② [STEP1], [STEP2], [STEP3] 과정 중 구분 없이 1개 과정만 수료

❹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따른 혜택(사업주교육)

- 산재보험요율 인하 : 10%,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
  -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❺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추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집체교육 방식에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구루미biz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수강할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카메라(웹캠) 설치 필수(신분증 확인, 실시간 화상교육)
- 화상교육 신청 및 수강방법, 교육 후 이수증 출력 방법 참조
- 교육교재 및 산재예방계획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 → 고객지원 → 공지사항에 게시

교육일정(20회)

순번	교육 과정명	교육일자	시 간	교육장소
1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07/20(수)	13:30~17:30 (4H)	대전세종광역본부 스튜디오 (화상교육)
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07/27(수)		
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08/03(수)		
4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08/10(수)		
5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08/17(수)		
6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08/24(수)		
7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08/31(수)		
8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09/07(수)		
9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09/14(수)		
10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09/21(수)		
11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09/28(수)		
1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10/05(수)		
1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10/12(수)		
14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10/19(수)		
15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10/26(수)		
16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11/02(수)		
17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11/09(수)		
18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 Ⅰ)	11/16(수)		
19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Ⅱ)	11/23(수)		
20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STEPⅢ)	11/30(수)		

※ 교육과정 STEP Ⅰ, Ⅱ, Ⅲ 상관 없이 교육 가능한 날 신청(교육대상, 강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화상 교육 수강 방법

크롬에서 **구루미Biz** 검색 → **방만들기&참여하기**에서 sms로 전송된 방 입력&검색
(모바일로 수강시 구루미Biz앱 설치→방 검색)

교육시작 10분전 강의장 입장, 강의실 입장시 출결관리 등에 사용되는 **ID설정*** 및 비밀번호 입력
* ID는 반드시 '사업장명_이름'의 형식으로 입력할 것
(예시 : 안전보건공단_○○○)

화상교육 강의실 입장 후, 교육 수강
(개인 PC에서 개별 수강, 1개의 PC에서 단체 수강시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음.)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 ☎ 042>620-5672~7 대표전화 : 042>620-5673

internet

안전은 권리입니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과정을 개설·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무료교육과정]

※ 사이트(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 **www.safetyedu.net** 가입 및 신청 절차 [뒷면 참고]

인터넷 교육과정

교육분야		과정명	교육시간
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패트롤 현장점검 교육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교육(제조)	2H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교육(건설)	2H
	4대 악성 사망사고예방 교육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교육	2H
		위험기계·설비 끼임사고예방교육	2H
		폐기물처리업 사고사망예방교육	2H
		발전산업 안전보건 기초교육	2H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교육 ***조종자격 불인정 교육**	1H
		항만하역업 사망사고예방 기초교육	2H
		질식재해 위험현장 교육	2H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현장관리자)	2H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화재감시자)	4H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	8H
중대재해처벌법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기초교육	2H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4H
법정·정책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2H

인터넷 교육과정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 전화 042-620-5671~7 대표전화 042-620-567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2년인터넷개설안내OPL-2차.indd 1 2022. 4. 20. 오후 1:19

인터넷교육 신청 및 수강방법

❶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www.safetyedu.net/safetyedu) 접속 및 회원가입

❷ 상단 '인터넷교육신청'에 마우스 위치 → 목록에 사망사고 예방 중점교육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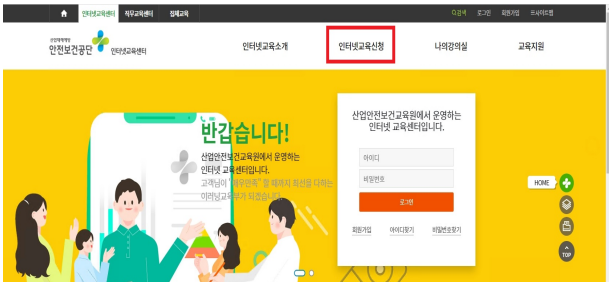

❸ 1번 항목 '희망과정【수강 신청】클릭'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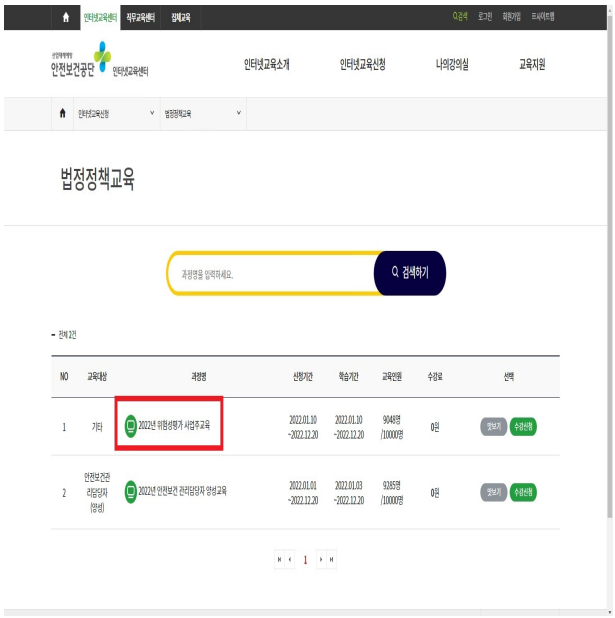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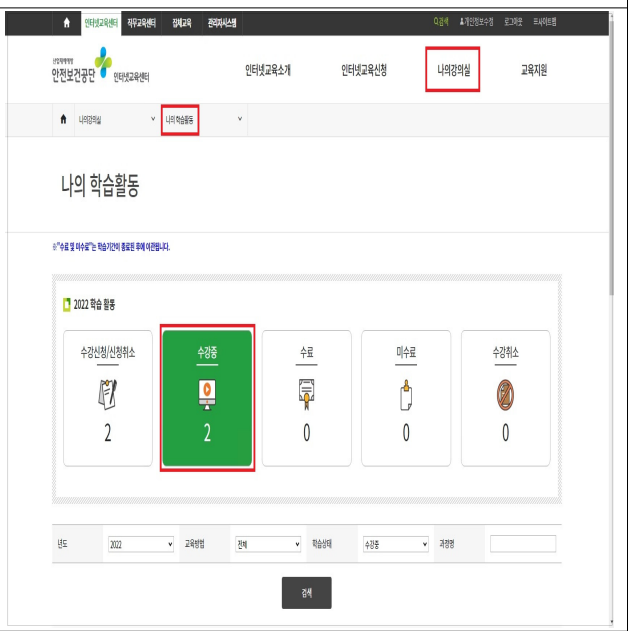
❹ 상단 '나의강의실' → '나의 학습활동' → '수강중' 목록에서 확인 후 강의실 입장 후 수강